
Policy and Law Report _Vol.18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4.12.~4.18.) -

April 19, 2023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중소벤처 기업부	•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제도 도입 벤처투자 생태계의 고도화와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국무회의 의결(4/11) → 공포(4/18) → 시행(공포 후 6개월 후)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더하여,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근거가 마련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결성주체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 - 대규모 기금(펀드) 운용 경험과 역량,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벤처투자사(벤처캐피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결성주체와 관련된 세부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 ②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일정 비중(예: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기금(펀드) 난립 방지를 위해 시행령에서 조합 결성 최소 규모(예:1,000억원)를 규정할 계획 ③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상향(최대 40%)하고, 사모기금(펀드)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여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	2023-04-11
식품 의약품 안전처	•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독성전문가, (사)대한화장품협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함 이번 협의체는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자료 강화* 등과 같은 글로벌 규제변화에 대해 국내 화장품 업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 '22년 ~ '24년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의무 단계적 강화 협의체에서는 천연물 등 원료에 대한 안전성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자료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성평가법의 국제조화 및 중국 규제당국과의 협력 등을 추진함	2023-04-12

부처	내용	일시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② 식약처·복지부·화장품산업연구원·독성전문가·화장품협회 등 민·관 함께 참여 ③ 원료의 안전성평가 모델 개발, 안전성평가법 국제조화 추진 ④ 국내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자료 국제 신뢰도 제고	
금융위원회	•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금융권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을 발표하였고 해당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뢰받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와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는 AI 특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CB)가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는지, 신용평가모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과 변수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였는지 점검하고, 신용정보회사가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고,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신용평가모형과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함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연내 AI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AI 신용평가모형에 대해서도 검증을 실시할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데이터 관리)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비금융·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점검 - 비금융·비정형 데이터를 신뢰성 높은 출처로부터 수집하고 데이터의 일관성·정확성*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 * (예시) 개인사업자 매출 데이터가 전월 대비 10% 이상 변동시 동 매출 데이터 오류가능성 재점검 ② (모형 선택) 다양한 AI 알고리즘의 특징과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용평가에 최적화된 모형을 선택했는지 모형 선정 과정을 점검 - CB사는 다양한 알고리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다양한 알고리즘 결과를 조합하여 모형을 개발하는 만큼, 알고리즘 선정 목적, 변수 선정 과정 등 모형 개발의 상세 과정을 확인 * AI 신용평가모형의 알고리즘은 크게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계열 등으로 구분되며, 다양한 세부 알고리즘이 존재	2023-04-17

부처	내용	일시
	③ (설명 가능성) 금융소비자에게 신용평가모형 및 신용평가 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 - CB사는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는 만큼, 설명가능한 AI 기법의 적용 여부, 해당 기법을 통한 모형의 해석 가능성 등을 점검 * 개인은 신용평가 결과, 평가 기준, 평가에 이용되는 정보의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 가능(신용정보법 제36조의2) ④ (모형 성능) AI 방법론의 특성을 반영하여 모형의 변별력·안정성 등통계적 유의성을 점검 - 과적합(overfitting*) 가능성 점검, 학습·검증·테스트 데이터의 유사성** 확인 등 AI 모형에 특화된 성능 확인 방법을 마련 * 모형이 학습 데이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 →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을 제시하지만 미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부정확하게 예측할 우려 ** 학습 데이터와 검증·테스트 데이터의 특성이 지나치게 다른 경우, AI 모형의 성능이 낮은 원인이 AI 모형의 문제인지 데이터 특성이 달라서인지 파악하기 곤란하여 모형 검증의 신뢰성이 낮아짐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보건 복지부	• 「약사법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10.19. 시행 예정, 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또는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이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의 재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위탁자인 의약품공급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의약품외품의 불법 거래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품외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의 취소 및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함 (제21조의3 신설) ②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을 치료하려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34조의6 신설) ③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규정함 (제46조의2 및 제47조제3항·제5항 신설) ④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그 종사자가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46조의3 신설) 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제47조제4항 신설) ⑥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재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5년간 각각 보관하도록 함 (제47조의2제2항 신설)	2023-04-1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 불법판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니터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제61조의2제2항 및 제61조의3 신설) ⑧ 의약품 불법판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61조의2제5항 신설) ⑨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하는 사단법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67조의2 신설) ⑩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판매, 구매, 표시·광고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 (제83조의8 신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등의 불법판매의 알선·광고와 관련된 현황 조사, 효율적 모니터링 기술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83조의9 신설) ⑫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94조제1항) ⑬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에 관한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95조제1항)	
환경부	• 「<u>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u>」(2024.4.19. 시행 예정)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필요한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가입 또는 보장계약 체결 이후 해당 시설에 대한 변경 인·허가 또는 변경 등록·신고를 하려는 경우 기존의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또한 이에 적합하게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의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장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때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영향조사 등 결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여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7호, 제16조제1항제9호,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20조의2 신설 등)	2023-04-1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 교통부	• 「<u>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u>」 (2023.4.17. 시행) 현행 규정상 주거이전비를 산정할 때 가계조사통계에 따른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해당 통계상으로 5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4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5인 이상인 가구의 주거이전비를 산정할 때 4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4인 가구의 주거이전비보다 불리해지는 불합리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54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	2023-04-17
	• 「<u>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u>」 (2023.10.19. 시행 예정, 다만 제8조 및 제9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예정)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모빌리티, 모빌리티 수단, 모빌리티 기반시설, 모빌리티 활성화, 첨단모빌리티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제2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제5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제6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제7조) ⑤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의 신설, 확장 및 개량을 할 때에는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도록 함 (제8조 및 제9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제10조) ⑦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음 (제11조 및 제12조)	2023-04-1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제15조)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 (제16조 및 제17조). ⑩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함 (제18조 및 제19조) ⑪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음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3.10.19. 시행 예정)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조합으로 정의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운용주체를 명시하며, 조합등록 및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투자 의무 등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12호 신설, 제62조제1항제1호, 제63조의2 신설, 제72조제2항제1호, 제80조제1항제1호)	2023-04-18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환거래법」 제정('99년) 이후 외환거래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 운영, 엄격한 제재규정, 복잡한 거래절차 등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경제성장 및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통령령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률에 명시된 규제사항인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에 앞서 의견청취 등을 위한 사전 협의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근거 신설 (안 제11조제5항 신설) ② 외환 스왑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스왑시장 참여 허용 (안 제18조제4항제4호) ③ 「외국환거래법」 상 거래절차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조정 및 형벌적용 기준(예:형벌적용 기준 거래금액) 완화 (안 제33조, 제40조, 제41조 별표4) ④ 「외환제도 운영, 법령해석·적용에 대한 업계 학계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안 제39조 신설) ※ 의견 제시기간 : 2023/4/14(금)~5/8(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로 제출	2023-04-14
법무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현행 「형법」은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할 뿐 사형확정자의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2023-04-1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이에 형의 시효의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공소권 행사 및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77조, 제78조제1호 삭제, 제80조) ※ 의견 제시기간 : 2023/4/13(목)~5/23(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법무부 형사법제과)로 제출	
산업통상 자원부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재정비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면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법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인·허가등 신속처리의 예외사유 규정 (안 제30조제3항) -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도산 등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유를 명확히 함 ②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안 제31조) - 산업기반시설 지원 범위를 특화단지의 운영뿐 아니라 특화단지의 조성까지 포함하도록 함 ③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를 규정 (안 제38조의2) -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함 ④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구체화 (안 제39조의2) -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재정, 금융,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 각종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함 ⑤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구체화 (안 제42조의2) - 환경부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특례를 요청할 수 있는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전략산업등 분야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 ⑥ 전문인력 양성사업 대상 고등학교 구체화 (안 제43조제1항) -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직업반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산업 인재양성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 구체화 함	2023-04-1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⑦ 해외 우수인력을 발굴·유치 지원 (안 제48조의2) -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화 함 ⑧ 업무의 위탁 (안 제52조제2호) -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의 접수를 추가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4/13(목)~5/23(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과)로 제출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에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에 더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안 제12조, 별지 제13호서식)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로 변경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4/13(목)~5/23(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과)로 제출	2023-04-1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제도 구체화를 위한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 관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22.10.18.) 및 시행 (’23.10.19.)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지정기준) 조직·업무체계,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 (안 제14조의2 신설) - (과징금) 검사기관 업무정지로 인한 이용자 불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안 제14조의3 신설)	2023-04-1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과태료) 안전성검사기관 및 제조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안 별표 3) ② 안전성검사 도입 등 수수료 체계 정비 (안 별표 2) - (기준정비) 시험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 실비 산출내역에 근거한 제품검사 수수료 산정 등 수수료 체계 통일단순화 - (적정성 검증) 제품검사 수수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회계법인 원가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③ 안전성 검사제도의 안정적 사후관리 기반 마련 - (배상책임) 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실한 검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금액 세부 기준 마련 (안 제14조의4 신설) - (판매중지 명령) 불법(예:미검사)·불량(예:미표시) 제품의 리콜 (안 제15조 개정) - (기타 제도 정비) 안전관리대상제품 확대(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따라 위임·위탁 등 기존 제도의 정비 (안 제18조 및 제20조) ④ 법률 조항 번호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 번호를 인용하는 조문 수정 (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별표 3 개정) ※ 의견 제시기간 : 2023/4/17(월)~6/16(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제도 구체화를 위한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 관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22.10.18.) 및 시행 (‘23.10.19.)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고시 - (대상 제품) 사용후전지를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전기용품을 재사용전지(안전성 검사대상전기용품)로 지정 (안 제3조제9항 및 별표 7의2 신설) - (안전기준) 고시된 안전기준 적용이 곤란한 제품에 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55조의6 신설) ②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등 규정 - (검사 절차) 안전성검사 신청, 재사용전지 전수검사, 제조업자의 검사 서류 보관 의무, 안전성검사서 발급 규정 (안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별지 제25·26호서식 신설)	2023-04-1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표시 의무) 검사가 완료된 제품의 출고 전 표시 및 표시사항 규정 (안 제55조의8 신설, 별표 9) ③ 검사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 (지정신청) 검사기관 지정절차 및 안전성검사 서류보관 의무 규정 (안 제55조의2, 제55조의3, 별지 제22호 제24호서식 신설) -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마련 (안 제55조의9, 별표 12의2 신설) ④ 법률 조항 번호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 번호를 인용하는 조문 수정 (안 제1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44조, 별표 10, 별표 12) ※ 의견 제시기간 : 2023/4/17(월)~6/16(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5인)」 최근 관할 구청, 세무서 등에서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상호 등기 등을 하면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표법」 상의 상표와 엄연히 구별되는 바, 「상법」 상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중 · 소상공인들이 상호와 상표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기관이 상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상호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2 신설)	2023-04-12
정무 위원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9인)」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법정 우대수수료를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감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수가정책 및 비급여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23% 수준으로 최고수준(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3제3항)	2023-04-1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2인)」 최근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하여 ‘고액 일당 지급’, ‘보험금 많이 받는 법’ 등과 같은 가장(假裝) 광고 등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험이 적거나 소득이 낮은 사회 초년생, 무직자 등이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및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당국이 보험사기행위 알선·광고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2 신설 및 안 제14조 등)	2023-04-1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신규 등록하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1년 이상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개시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업종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기존 영위하던 가맹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가맹사업이므로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 제도 시행 이전에 정보공개서만 등록하고 실제 가맹사업은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동 제도 시행 직전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정보공개서 매매 등을 통하여 제도 회피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종 변경을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 변경을 희망하는 업종의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업종 변경 사유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포함) 후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업종의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영점 운영 의무제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3제1항 및 제6조의4제1항제6호·제7호 신설 등)	2023-04-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이익배당은 결산 이후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즉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된 뒤, 수개월 이후에야 배당금을 확정하는 방식임	2023-04-1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그런데 이 경우 투자자가 배당금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한 채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이는 배당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특히,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다르고, 장기투자를 어렵게 하여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상법」상 결산 배당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배당액을 주주총회에서 먼저 결정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배당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진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65조의1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1인)」 현행법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에서는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소위 “꺾기”라 불림)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대출 전·후 1개월 내에 보험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꺾기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상해 등의 보험사고 시 보험금으로 잔존 부채를 변제하는 보장성 상품인 ‘신용보험’의 경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가족의 빚 대물림이나 개인신용하락을 방지하는 보호 수단이나 신용보강을 통한 대출금리인하를 유도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대출 계약과 연계하여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어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위험 보장의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신용보험이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신용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하여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성화하여 금리인하를 견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2023-04-1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1심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중에서도 위원장의 주재 하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전원회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원들의 출석여부 및 그 현황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위원장의 전원회의 참석률은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직 위원장들의 전원회의 참석률이 90%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저조한 수준임. 이로 인해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종료되면 그 다음 날까지 위원의 전원회의 출석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들의 전원회의 출석 현황이 관리되도록 하고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 65조제3항 신설 등)	2023-04-14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손해사정사를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여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어, 손해액보다 과소한 보험금 산정 등 보험회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에 대하여 연간 손해사정 건수 중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보험회사가 직접 고용 손해사정사 또는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보험금 과소 사정 등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험금 산정의 제도적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2023-04-17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최근 이동통신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해당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 메시지 등을 수신하게 되는 등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하여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높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안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2 및 제75조)	2023-04-17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접근매체’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접근매체를 발급하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상계좌는 ‘전산상 입금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여된 전산번호’로서 현행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제를 통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상계좌도 접근매체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0호바목 및 사목 신설 등)	2023-04-17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에 따르면 개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1천만원 이상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하여야 함	2023-04-18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그런데 이와 같은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잦은 등록과 폐업으로 행정력 낭비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5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기획재정위원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천연가스에는 개별소비세 60원/kg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2024년 12월31일까지는 대통령령에 따라 100분의 50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됨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며 민생안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함 이에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100분의 50을 조정할 수 있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조정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조제7항)	2023-04-13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 법원 등이 수사, 형의 집행 또는 재판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통신자료는 통신의 내용과 결합될 경우 개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현행법은 통신자료제출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 및 이용자에 대한 통지와 같은 제한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사전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후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본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통신자료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83조,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6까지 신설 등)	2023-04-1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일정한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주요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를 고려한 통신시설 등급지정, 통신재난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기준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사고와 같이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손해배상이 미비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하여 발생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주요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6조의3 신설)	2023-04-17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그 행위유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절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를 규제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콘텐츠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2023-04-17
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해당 저작물을 공표한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창작자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2023-04-12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직원, 또는 법인과 개인 사이의 불평등이 관련 계약에 반영되어 법인에 속한 직원이 창작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법인과 창작자 간의 불평등 계약으로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전체 수익에 비해 창작자가 얻는 보상이 미미한 경우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창작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공정한 조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나, 또는 업무상저작물의 창작·작성자로서 저작권이 법인 등에 있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과 창작자가 받은 보상을 비교하여 현저히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u>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21인)</u>」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국내복귀의 정의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이 까다로워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도 미미하게 나타나는 등 현재의 정책 지원은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복귀와 국내복귀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내복귀에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인소싱(해외생산)을 국내아웃소싱(국내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도록 함 (안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다목 신설) ② 국내복귀에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확대함 (안 제2조제3호)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제4항 신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국내복귀 관련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안 제12조제5항 신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안 제17조의2 신설)	2023-04-12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 「<u>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의원영의원 등 11인)</u>」 현행법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송전사업자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거나, 배전사업자가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변경인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인 RE100이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을 정도의 송전·배전용 전기설비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송전·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기 위한 대기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적기에 전력을 송전할 수 없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의 인가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에 우선적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사용과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5조)	2023-04-12
	• 「<u>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u>」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중요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현장에서는 산업기술 유출과 침해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입증요건이 과도하여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자에 대하여 형량을 높이고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산업기술침해행위의 요건을 완화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023-04-14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 를 요구받고도 대상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에 포함시킴 (안 제14조제6호의3)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안 제36조제2항) ③ 법원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 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조의3 신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남에도, 현행 법령상 공공연구 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며, 공 직자 윤리와 관련한 규정 위반과 본래의 직무와 충돌 가능성 등의 논란도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 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공연구자창업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② 공공연구자창업에 대한 정비 지원시책 근거 신설 (안 제25조의2) - 정부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③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 신설 (안 제25조의3)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공공연구기관이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창업기업에게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 영하여야 하며,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2023-04-14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④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겸임·겸직 허용 근거 신설 (안 제25조의4)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아 창업기업에 근무를 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u>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0인)</u>」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그런데 이에 따르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희망하였으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자도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법률 위반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자만을 처벌하도록 과태료 부과 대상을 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대상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한 자로 변경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제3항제2호)	2023-04-17
보건복지위원회	• 「<u>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0인)</u>」 현재 위생등급과 관련하여 우수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고, 모범업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수업소 지정제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함께 도입되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인증제도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수업소 지정·운영 실적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수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유사·중복 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인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47조)	2023-04-12
환경노동위원회	• 「<u>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u>」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17년부터는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제도로 오염물질 측정·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환경 관리 방식임	2023-04-1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본 법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부가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나 악취,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 순간적으로 배출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물질은 즉시 저감 조치가 필요함에도 사업장 점검 권한이 정부와 한국환경공단에만 있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수 없음. 일례로 민원 신고 후 정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민원 제기일로부터 수일에서 수십일 이후 방문하여 검사 감독하는데 이는 적시성이 떨어져 관리에 공백을 발생시킴 이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현장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출입·검사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채취한 오염물질 표본은 공식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관리체계의 신속성을 향상 시키고자 함 (안 제30조)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4/18(화) 10:30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Brad Smith) 초청 강연 - 미래를 열어가는 AI 기술, 그리고 책임과 윤리	국회방송 유튜브
국회도서관	4/19(수)	「금주의 서평」 제624호 발간 - 책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시대에 서점의 역사를 쓰다	
	4/19(수)	「World&Law」 제2023-8호 발간 - 학교폭력 멈춰!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4/20(목)	「THE 현안」 제6호 뉴스레터 발간 - 마약확산 문제	
예산정책처	4/20(목)	「NABO 경제 동향」 4월호 발간	
	4/21(금)	「2023 대한민국 조세」 발간	
	4/21(금)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발간	
입법조사처	4/17(월)	「이슈와 논점」 발간 -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별첨1] 제405회국회(임사회) 위원회 의사일정(안)

산자중기위	일시	구분	내용
정무위	4/20(목) 10:00	법안심사제2소위	- 법안 심사
기재위	4/17(월) 14: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및 상정, 현안질의
교육위	4/17(월) 16:00	안건조정위	-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방위	4/18(화) 14: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및 상정
법사위	4/10(월) 10:00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 심사
행안위	4/19(수) 10:00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 심사
	4/20(목) 10:00	법안심사제2소위	- 법안 심사
문체위	4/19(수) 10:00	체육관광법안 심사소위	- 법안 심사
	4/20(목) 10:30	문화예술법안 심사소위	- 법안 심사
	4/21(금)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현안질의
농해수위	4/19(수) 14:00	농림법안소위	- 법안 심사
산자중기위	4/20(목) 10:00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 심사
복지위	4/18(화) 10:00	청원소위	- 법안 심사
환노위	4/18(화) 14:00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	- 법안 심사
	4/19(수) 14:00	환경법안 심사소위	- 법안 심사
국토위	4/18(화) 10:00	교통법안 심사소위	- 법안 심사
	4/20(목)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및 상정
연금개혁특위	4/19(수) 14:00	전체회의	- 법안 심사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17(월) 10:00	공공행정 AI 도입방안 모색 포럼	장철민 의원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의원회관 8간담회실
4/17(월) 10:00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한국 개발협력 민간단체의 인도적지원 활동과 향후방향	유의동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4/17(월) 10:00	대한민국의 자체 핵보유, 국가생존과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	류성걸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4/17(월) 10:00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이종성·김예지· 최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4/17(월) 10:00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김영배 의원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4/17(월) 10:00	탄소중립과 순환자원 재활용 토론회	김형동·전해철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4/17(월) 14:00	2030 전공의 간담회 -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	인재근·정춘숙·신현영 의원실,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원회관 4간담회실
4/17(월) 14:00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	권칠승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실
4/17(월) 14:00	북한의 군사전략과 핵·미사일 능력 분석과 평가	이인영 의원실, 국회 한반도경제전략 연구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
4/17(월) 14:00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탄소중립 방안 지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	김희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산업분과	의원회관 1소회의실
4/17(월) 14:00	「탄소중립, 왜 블루카본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윤미향 의원실, 해양수산부	의원회관 3세미나실
4/18(화) 09:30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김종민·윤두현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4/18(화) 14:00	국민연금 2040 넷제로 Net Zero 달성 방안 토론회	한정애 의원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의원회관 2소회의실
4/19(수) 10:00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	소병훈·이종배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19(수) 14:00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토론회	김남국 의원실,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의원회관 1소회의실
4/20(목) 10:00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5 - 자율주행	박완주·정필모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실
4/21(금) 10:00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한준호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4/21(금) 13:30	대한민국 국회 해외입양 포럼	이수진·강민정·김성주 ·민형배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81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4/11(화)	「최근 현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3-3호)」 발간	
국회도서관	4/1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0호 발간 - 유럽연합(EU) 데이터 전략 관련 입법례	
	4/12(수)	「금주의 서평」 제622호 발간 - 붕괴의 사회정치학	
	4/13(목)	「현안, 외국에선?」 제57호 발간 - 영국의 보육료 현황과 정부의 보육지원	
예산정책처	4/12(수)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과 개선과제」 발간	
입법조사처	4/10(월)	「외국 입법·정책 분석」 32호 -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제도	
	4/11(화)	「이슈와 논점」 -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	
	4/14(금)	「외국 입법·정책 분석」 33호 - 헌법개정절차 해외헌법규정례	
미래연구원	4/11(화) 09:30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 - “100년간 기상 데이터로 본 기후위기, 대응 과제는?”	의원회관 2소회의실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10(월) 14:00	<u>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u>	이용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4/11(화) 10:30	<u>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전거정책 방향</u>	이용빈·최형두 의원실, 자전거타는 국회모임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4/11(화) 14:00	<u>환자 중심 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u>	고영인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4/12(수) 09:30	<u>「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u>	한무경·김한정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자원경제학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
4/12(수) 14:00	<u>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u>	김학용·김용판· 김경만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4/12(수) 14:00	<u>협동조합의 질적성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기재한부 의 역할</u>	서영교·이동주· 진선미·용혜인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4/13(목) 19:00	<u>하우스 어셈블리 시즌1</u> - 국민과 함께 연금개혁	유의동 의원실, 협동조합 하우스	여의도 HOW's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